

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관

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관

	[제정 2003-12-17]
(일부개정) 2004-11-30	(일부개정) 2005-04-02
(일부개정) 2005-06-17	(일부개정) 2006-03-30
(일부개정) 2007-02-14	(일부개정) 2007-04-27
(일부개정) 2007-06-28	(일부개정) 2007-08-22
(일부개정) 2008-03-28	(일부개정) 2008-12-02
(일부개정) 2010-02-24	(일부개정) 2011-09-09
(일부개정) 2012-12-26	(일부개정) 2014-01-10
(일부개정) 2014-12-16	(일부개정) 2016-02-02
(일부개정) 2016-03-17	(일부개정) 2016-12-27
(일부개정) 2017-12-28	(일부개정) 2018-10-02
(일부개정) 2019-04-15	(일부개정) 2020-08-05
(일부개정) 2022-08-10	(일부개정) 2022-11-08
(일부개정) 2023-11-20	(일부개정) 2024-05-1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·조사·연구하여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, 전시·보존·홍보하여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·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(이하 “역사문화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역사문화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“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”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역사문화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7.12.28.>

1. 충청남도 역사 문화관련 자료의 수집·정리 및 집대성
2.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·연구 및 계승
3.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<개정 2024.05.17.>

4. 충청남도 관련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·전시를 통한 자긍심 함양
5.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문화유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6. 충청남도가 계획한 역사 문화 관련사업 추진
7. 충남의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·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·연구 의뢰사업
8. 충청남도지 편찬 사업
9. 그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① 역사문화연구원은 목적사업에 드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충청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공여수익의 수혜자) ① 역사문화연구원은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출생지·출신·학교·직업 또는 그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7조(재산의 구분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12.28.>

1. 국가 또는 충청남도, 단체, 개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
2. 충청남도, 단체,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
3. 그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제8조(기본재산의 처분제한) 역사문화연구원의 기본 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감소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와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12.28.>

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역사문화연구원은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·관리할

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금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운영 재원)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,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출연금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역사문화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 등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**이사회 의결을 거쳐**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12.28.>

②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·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수입·지출 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, 감사의 감사 증명서, 그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잉여금의 처리) ①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로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 잉여금은 기본재산 출연자에게 분배할 수 없다.

제14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 역사문화연구원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역사문화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7.12.28., 2020.08.05.>

1. 이사장 1명
2. 원장 1명
3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, 원장, 노동자이사 1명 포함)
4. 감사 2명

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」 제2조제

1호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임원) ① 이사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한다. <개정 2018.10.02., 2022.08.10.>

② 원장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며 그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2.28., 개정 2023.11.20.>

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11.20.>

④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 <개정 2017.12.28., 2018.10.02., 2022.11.08., 2023.11.20.>

1. 충청남도 행정부지사
2.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
3.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

⑤ 감사 2명 중 1명은 충청남도(지도·감독 부서)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하고, 1명은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 모집한다. <개정 2023.11.20.>

⑥ 임원은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20.>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⑦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임원 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이사 상호 간에 「민법」 제777 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02.02.>

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적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
3. 「민법」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파산 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사람
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책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7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9. 역사문화연구원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 10.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11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9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그 직을 상실할 때 종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7조 제7항에 따라 새로 임용된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새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3.11.20.>

제20조(임원의 해임 등)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. <개정 2019.04.15.>

1.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 때
 3.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
 4. 제17조제5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② 임용된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

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③ 임용된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(원장 해임기준 등) ① 임용된 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임기준이 실제 적용여부 판단 시에는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9.04.15.>

1. 제17조제5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미 준수시
 2.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실적이 목표치의 50% 수준에 미달한 경우
 3.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
 - 가.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수익이 2년 이상 최근 5년간 평균 수익의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
 - 나.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·출연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
 4.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이사장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2.02.>
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 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,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

제21조의2(원장 연임 기준)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성과 계약의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경우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<신설 2019.04.15.>

제22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역사문화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이 될 때에는 이사 중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원장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의 책임을 진다.
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 상황 및 회계 감사
2.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요구
5. 이사회에 출석 또는 의견 진술

제22조의2(이사의 대표권 제한)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.<신설 2022.11.08. >

제4장 이사회

제23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4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5. 해산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그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 이사회는 회계연도 말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
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
 2. 제2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
-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그 소집을 꺼려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.

제26조(의결 정족수 등)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(의결 제척)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8조(서면 의결 금지)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중 역사문화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,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.

제29조(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0(간사) ① 이사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을 제외한 최상위 직위 중 행정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02.02., 2016.12.27., 2017.12.28.>

제5장 조 직

제31조(원의 기구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기구와 비상설 기구를 둔다.
② 상설기구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, 비상설기구로는 연구자문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6.02.02., 2016.12.27., 2017.12.28.>

③ 역사문화연구원의 직제,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(직제 및 정원, 사무분담) 역사문화연구원의 구체적인 직제 및 정원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3조(임면, 복무, 보수) ①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하고, 원장을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직원의 임면 · 복무 · 실적평가 ·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4조(공무원 파견요구 등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사문화연구원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연구자문위원회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회 수는 15명 이내로 원장이 위 · 해촉하고 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6조 <삭제 2016.02.02.>

제37조(경영공시) ① 역사문화연구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공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8조(정관의 변경)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9조(해산) ① 역사문화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역사문화연구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

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충청남도에 귀속한다.

제40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그리고, 「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05.17.>

제41조(규정의 제정 등) 이 정관에 위임한 사항과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42조(사전협의) 역사문화연구원 이사회 심의 안건은 도지사(관련 부서)와 미리 협의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.

제43조(공고)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중요한 사항은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는 지역신문 또는 충청남도공보(도보)에 게재하거나, 충청남도 또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.

[별표 1] <삭제 2017. 12. 28.>

부 칙

<2024.05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「문화재」를 「국가유산」으로 한다.

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, 제10조제6항중 「매장문화재」를 「매장유산」으로 한다.

②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1] ‘매장문화재’를 ‘매장유산’으로 한다.

③ 용역사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중 ‘매장문화재’를 ‘매장유산’으로 하고, 문화재청장’을 ‘국가유산청장’으로 한다.

④ 소장유물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5조제1항제3호, 제7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, 제12조제1항제1호, 제15조제2호, 제19조제1항, 41조제1항제4호, 별지제4호서식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으로 하고, 별지제5호서식중 ‘매장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으로 한다.

⑤ 매장문화재유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규정제목, 제2조제1항 및 제1항제1호, 제3조제2항, 제6조제1항제4호,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9조제5항,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2조제2항, 제14조제1항 및 제3항, 제15조제2항, 제17조제1항, 제19조 제1항제4호, 제21조제1항 및 제2항,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제1호까지,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4조제1항본문 및 제1항제2호·제3호,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‘매장문화재’를 ‘매장유산’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, 제5조, 제9조제1항 및 제4항,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제1호까지, 별표제7호서식, 별지제8호서식, 별지제9호서식중 ‘문화재’를 ‘매장유산’으로 한다.

제21조제5항제1호중 ‘문화재’를 ‘문화유산’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1호, 제9조제1항 및 제2항, 제19조제2항 및 제4항, 제21조제1항·제2항·제5항제2호, 제23조제4항 및 제5항, 제23조의2제1항, 제24조제1항 및 제2항, 별지제9호서식중 ‘문화재청장’을 ‘국가유산청장’으로 한다.

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‘동산문화재’를 ‘동산문화유산’ 한다.

⑥ 대행사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중 ‘매장문화재’를 ‘매장유산’으로 한다.

